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84

제출년월일 : 2014. 1. 7.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의 규정이 폐지되고,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한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신설(안 제12조의2)

-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 노외주차장의 규모(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
- 노외주차장의 규모(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로 제한([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표시 및 안내 유도 표지 -비고- 7.)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주차장법」 제13조의3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 현행조례(별표 포함)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상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 -비고- 7.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를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교통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기 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장계장 최 시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시 영 (행정 297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 <신설>	<p>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li> <li>2. 주택지조성사업</li> <li>3. 아파트지구개발사업</li> <li>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li> <li>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li> <li>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li> <li>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li> <li>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li> </ol> <p>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p>

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text{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 / 210 \times \text{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상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시(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관련)가.~다. (생략)

- 비 고 -

1.~6. (생략)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시(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관련)가.~다. (현행과 같음)

- 비 고 -

1.~6. (현행과 같음)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